

 보건복지부		보 도 자 료 6월 4일(목) 조간 (6.3. 12:00 이후 보도)	
배 포 일	2020. 6. 3. / (총 6매)	담당부서	지역복지과
과 장	곽 순 헌	전 화	044-202-3120
담 당 자	정 진 아		044-202-3122

복지 취약 동네 “사회보장특구” 로 집중 지원

- 보건복지부 2020년 7월부터 “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” 운영 -
 - 6월 중 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3년 동안 행·재정 집중지원 -
- 7월부터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.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8개 지역을 사회보장특구로 선정하고 중앙정부-광역자치단체-민간이 협력하여 3년간 행·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 공모를 진행한다.
-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위하여 읍·면·동의 저소득층 비율과 영구임대주택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산 북구 등 40개 기초자치단체(이하 ‘시·군·구’)를 사전 선정하였다.
- 이 밖에 특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있어서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시·군·구는 광역자치단체(이하 ‘시·도’)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. (20개소 이내)
- 보건복지부 사전선정 지역(40개소) 및 시·도 추천지역(20개소) 중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6월 10일(수)까지 제출하면 된다.

- 그간 정부는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및 포상, 각종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행·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시·군·구의 복지 수준 향상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.
- 이에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통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.
-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사업의 추진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.
- 첫째, 시·군·구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.
 - 특구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은 포괄 보조 방식으로 지역의 복지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.
 - 인적 자원 확보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지원과 상담(컨설팅)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지원한다.
- 둘째, 소규모 생활권역(동네)에 대한 공간 단위의 편셋형 지원을 실시한다.
 -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개인 단위 지원보다는 지역 자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공간 단위 집합적 개입(place-based approach)을 추진한다.
 - 또한 동네만의 지역진단과 복지쟁점(이슈) 발굴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형 생활서비스 등을 설계하여 진행하도록 지원한다.
- 셋째, 민간,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인적-물적-기반 시설(인프라) 투자를 지원한다.

-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센터,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연구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상담·조언(컨설팅)을 제공한다.
- 각 부처와 민간기관의 지역 중심 공모사업 및 생활 시설 사회 간접자본(SOC)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의 복지기반 확장을 도모한다.

□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신청지역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역 여건과 자발성과 적극성,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.

- 사회보장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특구사업 수행을 위한 중점기관 및 협력 기관을 선정하고 지역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,
- 주민 편의·생활시설 구축, 연대강화프로그램, 생활돌봄프로그램, 취약계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□ 보건복지부 박순현 지역복지과장은 “사회보장특구 지역이 지역 연결망을 강화하여 문제가 생긴 주민이 지역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 이에 지역이 함께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, 다시 말해 “복지 수요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지역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밝혔다.

< 붙임 >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추진 개요

붙임

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 개요

□ (법적 근거)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

(제48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)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,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, 그 밖에 보건, 복지, 고용, 주거,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* 사회보장급여법 제정(2015.7.1.)에 의해 신설된 사업으로 2020년 신규 예산 반영

□ (사업목적)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(동네)이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

○ 지역연결망을 강화하여 문제가 생긴 주민이 지역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, 지역이 함께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“복지수요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지역”으로의 변화 도모

□ (추진체계) 중앙(복지부-보사연 균형발전지원센터)-광역자치단체(시도-자문연구기관) -기초자치단체(시군구-민간협력기관)의 협업체계 구축

□ (사업기간 및 사업규모) '20년~'22년 (※ 3년간 8개 지역 지원, 매년 사업평가 후 계속 지원 결정), 총 69.6억 원*

○ 8개 지역당 3년간 총 8.7억 원(시도 매칭비 포함) 지원

※ 지역당 '20년 2.7억 원(시도 매칭비 포함), '21~'22년 각 3억 원(시도 매칭비 포함)

* '20년 국비 9.6억 원 + 시·도비 12억 원 = 총 21.6억 원

※ '21~'22년 각 24억 원(시도 매칭비 포함)

□ (사업내용) 중앙은 인적·물적 자원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과 지역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·운영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

○ 특구지역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다음의 수행과제 추진

- (인적자원 확보) 지역복지 전문가 채용 등 전문인력 확보
- (계획) 특구 지역의 복지 이슈 발굴, 지역진단 등으로 계획수립
- (프로그램)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형 각종 생활서비스*, 주민연결망 회복 프로그램 등 설계 및 운영
 - * 마을공동식당, 사회돌봄센터, 재능나눔프로그램, 빈곤아동 멘토링사업 등
- (자체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)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특구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자체 평가 실시

○ (프로그램) 기존 프로그램 연계 활용 또는 신규프로그램 신설

- (지역 인프라)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및 생활시설 등을 구축
- (지역 문화) 주민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
- (복지 서비스) 지역 내 높은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
- (복지 계층)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

□ (지역 선정) 복지부 사전선정지역(40개소)과 시도 추천지역(20개소)을 심사하여 최종 8개 지역 선정 예정(~6월중)

○ (복지부 사전 선정기준) 저소득층 비율이 인구대비 10% 이상인 읍·면·동과 대규모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있는 시·군·구(40개소)

구분		복지부 후보선정 시군구 (40개)
시 (22)	서울(4)	강북구, 강서구, 노원구, 강남구
	부산(4)	북구, 사상구, 영도구, 해운대구
	대구(4)	달서구, 동구, 북구, 수성구
	인천(2)	남동구, 중구
	광주(5)	광산구, 남구, 동구, 북구, 서구
	대전(3)	대덕구, 동구, 서구

도 (18)	경기(1)	동두천시
	강원(1)	춘천시
	충북(1)	청주시
	전북(8)	군산시, 김제시, 남원시, 익산시, 전주시, 정읍시, 부안군, 임실군
	전남(4)	나주시, 목포시, 영광군, 화순군
	경북(1)	울진군
	경남(2)	밀양시, 통영시

○ (시도 추천) 광역자치단체 내 특정 서비스 취약지역(20개소)